

서울연구원 · 랩2050
미래지향적인 사회 · 가치 혁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서울연구원과 랩2050(재단법인, LAB2050,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에 관한 의제 발굴과 정책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주요 연구분야인 사회, 경제, 산업, 노동, 가치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 공동연구,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연구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범위)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사회, 경제, 산업, 노동, 가치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과 공동연구 시행
2. 공동이슈 또는 연구결과 등에 대한 공개 학술행사(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개최
3. 연구과제 자문· 심의 등 전문 인력 상호 교류
4.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공유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

제3조(협약 준수)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1.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경비 부담)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1.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6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협약서 교환)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6월 15일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원장 서왕진



재단법인 랩205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그라운드 4층

이사장 이원재

랩2050 · 서울연구원
미래지향적인 사회 · 가치 혁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

랩2050(재단법인, LAB2050)과 서울연구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에 관한 의제 발굴과 정책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주요 연구분야인 사회, 경제, 산업, 노동, 가치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 공동연구,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연구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범위)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사회, 경제, 산업, 노동, 가치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과 공동연구 시행
2. 공동이슈 또는 연구결과 등에 대한 공개 학술행사(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개최
3. 연구과제 자문· 심의 등 전문 인력 상호 교류
4.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공유
5.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

제3조(협약 준수)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1.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경비 부담)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1.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6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협약서 교환)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6월 15일



재단법인 랩205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그라운드 4층

이사장 **이 원 재**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원장 **서 왕 진**
